

[] 전기식

[] 애플리케이션식

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

지정폐지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15일
신고인	상호(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신고내용	검정기관 소재지			
	폐지사유			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유의사항

○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에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